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
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 : 2020. 11. 16.
- 상정일자 :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0. 11. 25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박 해 룡)

가. 제안이유

-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,
- 관련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통해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자치법규상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 용어로 변경
 - 경질 ⇒ 변경
 - 망실 ⇒ 분실
 - 양양 ⇒ 드높이다

- 개정대상 조례 :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9개 조례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 일 회)

-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,
-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